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774호                 |
| 의결<br>연월일 | 2018년 1월 일<br>(제361회) |

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자   | 엄재창 의원 등 7인  |
| 발의연월일 | 2018년 1월 12일 |

#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

(엄재창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774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18년 1월 12일

발 의 자 : 엄재창 · 이의영 · 황규철 · 김인수 ·  
임병운 · 임희무 · 박봉순 의원(7인)

## 1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가 기존에 사용하는 조명을 발광다이오드(LED)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도내 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,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-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(안 제5조)
- 공공건축물, 가로등, 경관조명 등 LED의 공공부문 보급 확대(안 제6조)
- LED조명의 민간부문 보급 촉진(안 제7조)
- 도지사의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 우선 사용 권장(안 제8조)
- LED조명 보급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·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불 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

5. 예산조치 : '18년 예산(회계과 60,000천원)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 : 2018.1.4. ~ 2018.1.11.(8일간)

##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(LED, Light Emitting Diode) 조명의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충청북도의 발광다이오드(LED)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발광다이오드(LED)조명” (이하 “LED” 라 한다)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가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추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보급의 필요성
2. 관련 산업의 현황 및 보급 현황
3.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
4.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
5.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
6.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
7.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
8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공공부문의 보급 확대) 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, 가로등,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·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·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.

제7조(민간부문의 보급 촉진) ① 도지사는 민간부분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
2.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

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, 사업자, 민간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이나 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 이 경우 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 (지역생산 제품의 구매 등) 도지사는 신축건물과 LED조명 교체 시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

2. 제6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

3.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

4. 제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
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홍보활동) ①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.

②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·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기술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·단체 및 개인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 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

제4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“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
2.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
3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
4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
5. 에너지원간 대체(代替)
6.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
7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(價格豫示制)의 시행에 관한 사항
8.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
9.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